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220 발의연월일: 2024. 9. 24.

발 의 자:서천호·정성국·박덕흠

백종헌 · 임종득 · 김예지

우재준 • 이양수 • 정희용

김선교 • 이만희 • 한기호

서지영 · 김용태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, 「산림기본법」, 「해양수산발전 기본법」 및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에 따라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,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 ·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최근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 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 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「청년기본법」이 제정된 바, 법 제정 취지에 맞추어 농어촌 청년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농어촌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의2).

법률 제 호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의 제목 중 "청소년"을 "청소년·청년"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"아동과 청소년"을 "아동·청소년·청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의2(농어촌 지역 아동・ <u>청</u>	제17조의2(농어촌 지역 아동・ <u>청</u>
<u>소년</u> 에 대한 지원) 국가와 지	<u>소년·청년</u> 에 대한 지원)
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<u>아</u>	<u>o}</u>
<u>동과 청소년</u> 의 역량을 강화하	<u>동·청소년·청년</u>
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	
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	
야 한다.	